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정보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직접 차단 요청 근거 마련>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95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정보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직접 차단 요청 근거 마련(안 제44 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윤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9. 9.

다. 회 부 일 : 2024.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류 등에 관한 삭제·차단 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한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함(제44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불법정보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직접 차단 요청 근거 마련 (안 제44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불법정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긴급한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44조의7 제6항).
-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훼손 정보나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으며,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제7항).
-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3조 제5호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u> <u>회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u> <u>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u> <u>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불</u> <u>가능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u> <u>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피해자</u> <u>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u> <u>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u> <u>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u> <u>여금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u> <u>·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u> <u>수 있다.</u> <u>⑦ 제6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u> <u>여는 제2항 후단 및 제4항을</u> <u>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u> <u>원회”는 “수사기관의 장 또는</u>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u> <u>본다.</u>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3조(벌칙) -----

현행	개정안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44조의7제6항에 따른</u> <u>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u> <u>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을</u> <u>이행하지 아니한 자</u>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를 규정하고,
- 해당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¹⁾.

1)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심의·차단제도>

구분	정보 유형	차단 절차
제1항 제1호 ~제6호의3	- 음란정보 - 명예훼손 정보 -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 - 정보통신시스템 훼손 등 정보 - 법령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관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2)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구분	정보 유형	차단 절차
	- 불법 사행행위 정보 - 불법 개인정보 거래 정보 - 총포·화약류 제조법·설계도 등	
제1항 제7호 ~ 제9호	- 국가기밀 누설 정보 - 국가보안법상 금지행위 수행 정보 - 그 밖에 범죄 목적·교사·방조 정보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불법촬영 물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 포함) 의 요청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시정요구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 정지·제한 명령

○ 따라서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정보의 차단을 명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은 대통령이 9인 중 6인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방통위설치법 제18조는 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³⁾.

3)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

- 이에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을 직접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한 때’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방통위설치법 제18조 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⁴⁾,
이에 따르면 9인 중 1인이라도 결원되는 경우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임.
- 한편, 현행 법령상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최소 위원 수는 3인으로 보이므로, 현실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원이 2인 이하인 경우로 보임.
- 이는 방통위설치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4)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두지 않고 있으나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있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⁶⁾.

- 이처럼 현행 법령상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한 때’가 상이하므로, 개정안에서 의도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따른 요건을 ① 위원 9인 중 1인이라도 결원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경우, 위원 중 극히 일부가 결원되어 실질적으로 심의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심의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② 위원이 2인 이하인 경우로 해석하는 경우, 현행법상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회 추천 몫을 제외한 3인의 위원은 대통령

5) 제22조(회의 등)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제4조(의결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재량으로 위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위원이 2인 이하인 상황이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024년 10월 현재도 방심위 위원은 위원장 포함 3인임.

○ 둘째,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⁷⁾, 불법정보의 심의는 법률상 심의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함⁸⁾.

○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의 예외를 두기보다는 심의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셋째, 현행법과 달리 불법정보 차단 요청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수사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현행 방통위설치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

7)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및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불법정보 심의·차단제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 유해한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⁹⁾,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해당함.
- 이에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불법정보 차단 요청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되 방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만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임.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수사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자에게 모든 불법정보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체계 및 정부조직의 사무 배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가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방송·통신 내용

9) 현재 2012. 2. 23. 2008헌마500

…전기통신망 특히 인터넷 매체는 기존의 통신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을 가지고 있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실제 범죄의 발생 가능성 및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에서 위와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에 관한 심의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기구로서, 수사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심위 심의 없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의 유통제한을 명할 경우 방심위 설립 취지와 현행 심의제도에 충돌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방송·통신 내용규제 기능을 정부부처가 아닌 방심위에 부여한 것은 방송·통신 내용규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내용심의는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방심위 구성 지연에 따른 심의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된 심의위원이 후임자 위촉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통위설치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정보 차단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단순히 불법정보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단명령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등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